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하고,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하며 검사항목 중 혈압, 혈당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,

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공동 이용 대상기관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, 해당 기관이 의료적성검사 결과 등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법」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 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혈압 및 혈당 항목의 검사결과가 별표 4에 따른 추적관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결과가 적합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,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”으로 하고, “배치하여”를 “배치하여야 하며,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(이하 “전산망”이라 한다) 이용권한을 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[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(K-MoCA만 해당한다) 및 미로검사(Maze test) 사본을 말하며,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·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]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①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하고,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,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(또는 검진)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내에 검사(또는 검진)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. 다만,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.

제8조제4항 중 “수검자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적성검사서 및 제9조에 따른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제6조에 따라 판정한 후 수검자에게 그 결과를”을 “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수검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갈음하기 위해 의료적성검사서등을 제출하고자”를 “대체하고자”로 하고, “제출하여야 한다.”를 “제출하거나,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의료적성검사서등 및 검사신청 관련서류”를 “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을 “재검사기간 등”으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,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를 받거나”를 “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조의2

제2항제2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 중 “의료적성검사서등”을 “의료적성검사서 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”를 “의료적성검사”로 한다.

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의료적성검사기관의 지도·감독)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점검 할 수 있으며 의료적성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제16조(중전의 제15조)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”을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7월 1일”로 하고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4의 제목 중 “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”을 “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(제6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신체계측		키, 몸무게	
③ 혈압	혈압측정	적합판정 기준	추적관리 대상 기준
		(수축기) 160mmHg 미만 (이완기) 100mmHg 미만	(수축기) 140mmHg 이상 160mmHg 미만

			(이완기) 90mmHg 이상 100mmHg 미만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4 ④ 혈당의 당화혈색소(HbA1c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당화혈색소 (HbA1c)	적합판정 기준	추적관리 대상 기준
	(혈액검사) 9% 미만	(혈액검사) 6.5% 이상 9% 미만

별표 4 주)제3호 본문 중 “의료기관 검사결과서”를 “건강검진결과통보서”로, “검사결과서 유효기간”을 “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”으로, “최근6개월내”를 “최근 3개월내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1년”을 “6개월”로 하며, 같은 주)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혈압 및 혈당검사 추적관리 대상자는 최근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,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의료적성검사(재검사를 포함한다)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특례) 제7조,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전산망 개선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전 규정도 적용한다.

제12조(검사서 판정절차 등) 의료 적성검사서등 판정세부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시기관인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검사수수료)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15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

제12조(검사서 판정절차 등) 의료 적성검사서 등 -----

-----.

제13조(검사수수료) ① 의료적성 검사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의료적성검사기관의 지도·감독)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의료적성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제16조(재검토기한) -----
----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--(----- 6월 30일-----)
-----)

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 ---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